



18년만에 대의원 수 증원 결정

김세영 집행부 1년 평가·전문·업거제도 개선 등 다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출범 1년을 맞은 김세영 집행부를 평가하고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척결, 노인틀니 급여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선거제도 개선 등 치과계 현안문제와 대책을 고심하는 제 6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8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201명의 대의원 중 161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9건, 일반안건 63건 등의 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여성대의원 8명과 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 및 부회장 등 10명의 대의원을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여자치과의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여성대의원 증원과 젊은 회원들의 대의원 참여가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되게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3년 4월 정기총회에서 331명이던 대의원 수를 1996년 4월부터 201명으로 고정 선출기로 함에 따라 201명으로 진행돼오던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수가 18년만에 늘어나게 됐다.

또 대의원 수 증원과 함께 권리정지가 된 회원들의 경우 지부별 소속 회원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지부별 대의원 수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해 전회원 명의의 집단적 민원과 소송을 제기기로 결정하는 등 불법 네트워크 척결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또한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기존에 정해진 교체주기 5년에 1회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안 등을 제시

해 큰 난항이 예상돼 이날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례적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40분이 넘게 노인틀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치과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서는 치협 집행부가 노인틀니 시행을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로 하는 한편 정책연구소 내 소장, 보험부회장, 지부장 1명 등이 포함되는 보철 보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개방형 선거인단을 통한 협회장 선출 등 회장선출 방안, 치대 및 치전문 정원 감축, 윤리위원회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AGD 향후 대책 등 치과계의 다양한 현안 및 개선책들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2011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승인됐으며, 2012년도 사업계획과 49억6천5백만여원의 일반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대의원들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점심식사를 했으며, 지부장협의회 및 지부장회의, 심의분과위원회를 활용한 진지하고 압축된 논의 과정을 거쳐 저녁 6시35분경 총회를 마무리했다.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기로 결정됐다.



“치협 정책역량 강화”

정책연구소 사업계획·예산 통과

치협의 정책 산실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올해도 치과의료 및 보건정책 연구를 통해 치협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6억7천9백29만여원의 연구소 예산이 4월 28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했다.

연구소는 치협 정책 현안 과제에 대해 시의성 있는 연구용역을 우선과제로 실시하고 협회의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연차적인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수요 조사와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연구과제를, 공모

를 통해 일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사업과 함께 치과의료 주요 정책과제를 의제화 하기 위해 정책포럼 및 토론회, 정책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 등을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소는 치과의료 통계 및 여론조사, 정책동향 조사 및 자료 수집, 타 의료단체 정책연구소와 교류 및 협력, 정책자료 관리 등 일상업무와 함께 연구소 역사 발간 준비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연구소 회비는 개원의가 3만원, 비개원의 회원과 공직회원은 1만5천원, 전공의 및 공보의는 1만원이다.



‘환자 권리·의무’ 액자 게시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벌칙조항도 마련

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하의 액자를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시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게시내용 및 방법과 장소를 정했다.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액자의 크기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가로 50cm, 세로 100cm이며, 의원급의 경우 가로 30cm, 세로 50cm이다. 액자 게시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게시물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하로 제작해야 하며, 환

자의 권리로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 4개의 항목을 규정하고, 환자의 의무로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2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야 하며, 게시 의무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과태료 부담까지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라는 데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전국 의사총연합회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또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같은 제도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